# 오산르네상스포럼 정관

제 정: 2020년 06월 20일

개 정: 2021년 04월 16일

# 제 1 장 총 칙

# 제1조 (명칭)

본 회의 명칭은 '오산르네상스포럼'이라 하며 영문명칭은 Osan Renaissance Forum 으로 쓰고, ORF로 약칭할 수 있다.

# 제2조 (목적)

본 회는 오산지역의 올바른 지역발전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조사 각종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와 교육 및 문화행사 서비스를 하며, 오산 지역의 건전한 시민사회의 형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3조 (소재)

본 회의 주 사무실은 오산시에 소재한다.(경기도 오산시 대원로 65 운암프라자1차,4층)

# 제4조 (사업)

본 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.

- 1. 오산지역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
- 2.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활성화의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, 정책토론회 등 개최
- 3.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각종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제안
- 4.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활 성화를 위한 교육 및 문화행사서비스 사업과 홍보 등 시민 캠페인 활동
- 5. 주민자치 실현, 지역 활성화,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서 발간 및 출판 사업
- 6.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
- 7. 인물발굴사업, 청년육성을 위한 인재양성
- 8.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# 제 2 장 회 원

# 제6조 (회원)

- ① 본 회의 목적과 정관에 동의하는 개인과 단체는 회비납부, 입회원서 제출 등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.
- ②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.
- 1. 정회원 :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약정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며 소정의 등록절차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.
- 2. 준회원 :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하였으나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

이나 단체를 말한다.

3. 후원회원 : 본 회의 목적과 사업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#### 제7조 (권리와 의무)

회원은 다음 각 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- 1. 본 회의 제반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
- 2. 의견 제안권,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진다.
- 3.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
- 4. 의결기관의 결정을 준수할 의무.

# 제8조 (탈퇴 및 상벌)

-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탈퇴원을 제출한 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- ②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.
- ③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및 회원자격 박탈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- ④ (거출금의 불 반환) 회원이 이미 납입한 회비나 기타의 거출금품은 반환하지 않는다.

# 제 3 장 조직과 운영

# 제1절 임 원

# 제9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본 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.

- 1. 상임대표를 포함한 공동대표 3인 이하
- 2. 상임이사 1인
- 3.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 (대표이사 포함)
- 4. 운영위원장 1인
- 5. 사무처장 1인
- 6. 운영위원회 위원 15인 이내
- 7. 자문위원회 30인 이내
- 8. 전문위원 10 이내
- 9. 감사는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.
- 10. 고문은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.

#### 제10조 (임원의 선출)

① 공동대표, 상임이사, 이사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단, 비 등기 이사는 이사회에서

선출하다.

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.

# 제11조 (임원의 임기)

-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③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임원의 수가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#### 제12조 (임원의 직무)

- ① 공동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, 상임대표 1인을 정하며 본회의 최고 대표자로서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상임이사는 상임대표를 보좌하여 원활한 이사회가 진행되도록 이사회를 총괄 주관한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중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총회로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④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, 이사회의 추천으로 상임대표가 임명한다.
- ⑤ 사무처장은 사무국을 총괄한다.
- ⑥ 운영위원회는 본 회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, 홍보 할 수 있다.
- ⑦ 자문위원회는 본 회 이사회의 자문역할을 한다.
- ⑧ 전문위원은 본 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의 교육을 담당한다.
- ⑨ 감사는 본 회의 재산 상황,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,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,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 제13조 (공동대표의 직무대행)

① 공동대표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 한다.

# 제2절 총 회

## 제14조 (구성과 권한)

본 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총회를 두며 본 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
# 제15조 (총회의 소집)

-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,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.
-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- 1.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
- 2. 재적회원 1/5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

3.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
# 제16조 (총회개최 통지)

총회 7일전까지 총회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, 전화, 문자 등 회원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## 제17조 (총회의 성립과 의결)

-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회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총회에 선거권 및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행사 할 수 있다.

# 제18조 (총회의 권한 및 의결사항)

총회는 본 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아래 사항들을 심의.의결한다.

- 1. 정관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
- 2. 임원의 선출
- 3. 사업계획의 승인
-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5. 이사회나 회원 1/5이상의 요구로 회부된 주요 사항
- 6. 재산의 매도. 증여, 담보, 대여, 취득 기채 등에 관한 사항
- 7. 본회의 해산 및 합병

#### 제19조 (의결 제척사유)

회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- 1.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## 제20조 (총회의사록)

-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 출석한 이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보관하여야 하며, 차기 총회에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의장은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 제3절 이 사 회

# 제21조 (구성과 역할)

- ① 총회에서 선출된 공동대표와 5인 이상 3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단 이사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를 차기 총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.

# 제22조 (소집)

- ① 이사회는 상임대표가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년 2회 이상 개최한다.
- ② 임시회의는 이사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, 또는 상임대표가 임시회의의 개최가 필요 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.

#### 제23조 (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.의결한다.

- 1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- 2.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, 예산.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- 3. 총회 및 이사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
- 4.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5. 고문, 자문위원 위촉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6. 본 회의 지역 지부 및 대표자에 대한 인준
- 7. 각 분과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운영에 관한 사항
- 8.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

#### 제24조 (서면결의)

-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# 제5절 사무처 및 부설기구

# 제25조 (사무처)

- ① 본 회의 일상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이를 총괄토록 한다.
- ②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상임대표가 임명한다.
- ③ 사무국에 필요한 인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상임대표가 임명한다.

## 제26조 (부설기구)

본 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,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기타의 상설적 또는 한시적인 활동기구를 신설할 수 있다. 부설기구는 자체의 결의에 따라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나 부설기구의 중요 결정사항은 이사회의 재결을 받아야한다.

# 제 6 절 운영위원회

#### 제27조 (운영위원회)

본 회의 이사회의에서 의결한 사업을 집행하고 이사회의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여 건의한다.

- 1. 운영위원회는 기획위원 1인을 둘 수 있다.
- 2. 운영위원회는 홍보위원 1인을 둘 수 있다.
- 3. 운영위원회는 청년위원 1인을 둘 수 있다.
- 4. 운영위원회는 문화예술위원 1인을 둘 수 있다.
- 5. 운영위원회는 봉사위원 1인을 둘 수 있다.

6. 운영위원회는 본회에 필요한 위원을 둘 수 있다.

# 제 7 절 고문, 자문위원, 전문위원

## 제28조 (고문)

본 회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언과 지도를 받기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계의 존경받은 원로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# 제29조 (자문위원)

본 회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문을 받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계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# 제30조 (전문위원)

본 회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계의 전문가로 본 회 사업에 교육을 담당한다.

# 제 4 장 재산 및 회계

#### 제31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)

본 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 제32조 (회계 년도)

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 제33조 (세입/세출예산)

본 회의 세입/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 작성한 후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**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**.

## 제34조 (결산)

상임대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,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 제35조 (결산공개)

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나 SNS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
#### 제36조 (환급금지)

본 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를 비롯하여 어떤 이유로도 환급되지 아니하고, 본회에 귀속된다.

#### 제37조 (수익배분 금지)

본 회는 일체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며 단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어떠한 수익분배를 하지 않는다.

# 제 5 장 보 칙

# 제38조 (회의성립과 의결정족수)

각급회의는 재적 과반수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# 제39조 (정관개정)
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, 이

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 제40조 (법인해산)

- ①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본 회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.

## 제41조 (시행세칙)
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
# 제42조 (준용)

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 (2021.04.16.)

제1조 (효력발생)

본 정관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오산르네상스포럼